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06

2021. 4. 30.(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김국기 의원

나. 발의일자: 2021년 4월 13일

다. 회부일자: 2021년 4월 16일

라. 상정일자: 2021년 4월 23일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국기 의원)

가. 제안이유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내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전통문화 유산인 효의식 함양과 효행 장려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 효행교육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효행교육 실시(안 제5조)

○ 효행교육 사업(안 제6조)

○ 홍보(안 제7조)

○ 표창(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홍만표)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학생들에게 효의식 함양과 효행 장려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효행교육을 진흥시켜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효행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학교장이 효행교육 진흥을 위해 효행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효행 관련 봉사와 동아리 활동 활성화, 효행의 날이나 달 운영 등과 같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효행교육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와 효행 장려 및 효행문화 확산을 위해 효행교육 우수사례와 관련

자료 등에 대해 홍보하도록 하고, 효행이 우수한 학생 및 효행교육 진흥에 공로가 큰 학교나 교사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에는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현재 우리사회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공동체의식 약화와 효 의식 상실, 심화되고 있는 세대 갈등 및 노인 학대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 제정은 충청북도교육청의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문화함으로써, 학생들의 경로효친 의식 함양과 실천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고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5.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 및 경로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교육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효행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행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2.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활동 운영 방안
3. 효행교육 관련 교원 연수 방안
4. 효행교육 홍보 및 효문화 확산 방안
5.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효행교육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효행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등에서 효행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효행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와 효행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에서의 효행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학교장은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효행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효행 관련 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3. 효행교육 관련 홍보 및 행사
4. 효행의 날 및 효행의 달 운영
5. 효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
6.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홍보) 교육감은 효행교육과 효문화 확산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와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우수 사례 및 관련 자료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포함한 다양한 홍보체계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효행을 장려하고 효문화 확산을 위하여 효행이 우수한 학생과 효행교육 진흥에 공로가 있는 학교, 교원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효율적인 추진과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90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6. 2. 3.>

제9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 유아교육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가 어려움